

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, 중기부,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

-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1일부터 선제적 점검
- 식료품·음료 제조사,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에 15개 위탁기업 대상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4월 1일부터 **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**에 대해 **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**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**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**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, 그리고 **수탁기업이** 이를 **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**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.

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,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.

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*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,171달러, 1,425달러를 기록하며, 전월말 대비 각각 83.0%, 109.6% 폭등하면서 **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**이다.

* 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 기준

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. **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, 음료 제조사,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**이다.

주요 점검내용은 ▲**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**, ▲**부당한 납품대금 결정**, ▲**납품대금 미지급**, ▲**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** ▲**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***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.

* 공급원가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

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,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, 시정명령, 벌점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,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.

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“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”라며, “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·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상생협력정책국 불공정거래개선과	책임자	과 장	성녹영	(044-204-7940)
		담당자	사무관	박근모	(044-204-7946)
			주무관	정두리	(044-204-7918)

□ **근거법령**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제40조

□ **추진배경**

- 최근 플라스틱용기 제조원가의 70%이상 차지하는 합성수지원료의 가격이 30% 인상되어 관련 제조업체의 원재료 부담이 급증
-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는 복수공급망, 과잉공급 구조, 제품 차별화 부족 등으로 연동제 취약업종에 해당하여 선제적 점검이 요구
- *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에 대해 연동제 첫 직권조사를 실시('24) → 3개사 행정처분

□ **조사개요**

- (조사 대상) 조합이 점검을 요청한 식료품 대기업 등 플라스틱용기의 수요가 많은 3개 업종 매출액 상위 각 5개사(총 15개사) 선정
 - * 조사대상 거래기간 '25.1.1. ~ '26.3.31. 중 수위탁거래 내역
 - ** 조사대상 업종 : ① 식료품 제조업(즉석밥, 식용유 등), ② 음료 제조업(탄산음료, 생수 등), ③ 커피 프랜차이즈(커피 및 식음료 등)
- (조사 내용)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 관련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여부
 - * 주요 점검행위 : 쪼개기 계약, 미연동 합의 강요·유도 등 탈법행위, 연동약정 미체결,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
- (조사 방법) 거래내역, 약정서 등 사전 서면조사 후 현장조사 대상 선정
- (조사반 편성) 기업규모에 따라 조별 3~5명 구성

□ **향후 추진 계획**

- 서면조사(15개사) 실시(4.1~) → 서면조사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기업 선정(4월) → 현장조사 실시(5월~7월) →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(9월)